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8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9)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1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1)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7)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2)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23.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2)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2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1)
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8)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8)
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8)
44.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4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4)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208277)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9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32)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51)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59)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7)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64)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2)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5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5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5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6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61.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6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6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6)
 7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7)
 7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8)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0)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8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8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8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84.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31)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76)
8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8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9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9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92.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2)
9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9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1)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9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86)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4)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95)

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1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1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10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10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10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11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1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2)
1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1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1)
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55)
1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3)
1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36)
12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55)
1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1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1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1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1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1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0)
1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1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1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1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1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1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14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1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1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1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2)
1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1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1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1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5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0)
1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1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1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16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16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16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1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1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16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1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1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174.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1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176.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7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17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18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1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1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1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19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84)
 1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4)
 198. 현안질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특허청 소관
 19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추가)
 20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추가)
 201.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추가)
 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추가)
 20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추가)
-

상정된 안건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9)	18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18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18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9)	18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18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18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18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18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18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8
1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19
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19
1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19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9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19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19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19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19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1)	19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7)	19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2)	19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19
23.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19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2)	19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19
2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19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19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19

.....	19
2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19
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19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6)	19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19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4)	19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8)	19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8)	19
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1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19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19
3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19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20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20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20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8)	20
44.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20
4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64)	20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08)	20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77)	20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78)	20

번호 2208391)	20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32)	20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51)	20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59)	20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7)	20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64)	20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20
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2)	20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20
5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20
5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20
5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20
6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20
61.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20
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20
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20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21
6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21
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21
67.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21
68.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21
6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6)	21
7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7)	21
7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21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8)	21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21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21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21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21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21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0)	21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21
8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21
8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21
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21
8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21
84.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21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731)	21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76)	21
8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21
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21
8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21
9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21
9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21
92.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21
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2)	21
9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22
9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22
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5)	22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01)	22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22

9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22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086)	22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4)	22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95)	22
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22
1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22
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22
1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22
10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22
10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22
10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22
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22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22
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22
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22
11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22
1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22
1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22
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892)	22
1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43)	22
1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1)	22
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55)	22
1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3)	23
1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36)	23
12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55)	23
1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23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23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23
1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23
1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23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23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23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23
1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23
1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23
1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0)	23
1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23
1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23
1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23
1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23
1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23
1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23
1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23
14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23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3)	23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9)	23
1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6)	24
1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9)	24
1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2)	24

1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9)	24
149.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24
15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24
15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24
15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24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24
15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24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24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0)	24
1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24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24
1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24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24
1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24
1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24
16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5)	24
16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24
16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24
1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24
1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24
168.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25

1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25
1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25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25
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25
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25
174.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25
1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25
176.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25
17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25
17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25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25
1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25
18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25
1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25
1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25
1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25
1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25
1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25
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25
1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25
1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25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25
1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25
1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25
1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25

1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	25
19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	25
1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84)	25
1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4)	25
198. 현안질의	37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특허청 소관	
o 의사일정 변경 및 상정의 건	41
19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42
20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42
201.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42
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42
20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42
198. 현안질의	42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특허청 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새로이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개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속 김성원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 대신 오신 박형수 위원님은 중소벤처기업소위로 개선되셨고,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서일준 위원님과 장동혁 위원님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로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먼저 새로 보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

안 하시겠어요?

○**박형수 위원** 다 아는 처지에 뭘……

(웃음소리)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이를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엔솔이 건설 중인 공장 현장에서 300여 명 넘는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 등—47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이분들이 불법체류자로 미국 관계 당국에 체포 또 연행된 후에 구금되어 있는 불상사가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미 관계 기관에 의해서 포승도 아닌 쇄사슬에 묶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놀라고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주 투자는 바로 우리 위원회 또 여기 계시는 김정관 장관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또 관계돼 있는 기업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먼저 신속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돼서 촉구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절차는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은 기후특위 전체회의 산회 후 현안질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시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 15시에 잠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어서 약 3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9)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1)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9)
 5.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6)
 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9)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6)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1.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4)
1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8)
1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3)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0)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3)
1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7)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1)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7)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2)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7)
23.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2)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2)
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2)
26. 방사선산업 진흥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9)
2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2)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9)
29.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111)
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76)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20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58)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538)
3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1)
3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4)
39.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49)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8)
44.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5)
4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4)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7)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9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2)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51)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59)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07)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64)
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9)
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2)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5)
5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0)
5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9)
5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2)
6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0)
61. 에너지급여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6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1)
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1)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1)
6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3)
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3)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5)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0)
69.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6)
7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7)
7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3)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8)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4)
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5)
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3)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0)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8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8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7)
8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5)
8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84.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8)
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1)
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6)
87.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8)
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9)
8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5)
9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6)
91.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92.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2)

9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3)
95.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1)
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5)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1)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3)
99.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2)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6)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4)
1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5)
10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1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2)
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2)
1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10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3)
10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6)
10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0)
1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4)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4)
11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0)
1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3)
11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1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4)
1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7)
1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2)
1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3)
1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1)
1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5)

1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363)
1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36)
12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5)
12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3)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2)
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1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1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8)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5)
1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7)
13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13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13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0)
13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13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1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1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5)
13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6)
1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1)
14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2)
14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1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03)
1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689)

1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06)
1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179)
14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42)
1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09)
1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1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1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15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15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1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0)
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0)
1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5)
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3)
16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16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16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16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85)
16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16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1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16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16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1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1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1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1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174.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6)
17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176.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1)
17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5)
17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7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8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6)
18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8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18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18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8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8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1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5)
18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19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1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1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1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19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9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4)
19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4)

(14시11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7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좀……

○위원장 이철규 좀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산자부, 한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부의 유품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2671억 원의 유품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가전제품 업계의 내수 진작을 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품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개시 7월 4일 이후에 쿠팡 등 판매사별·가전제품별 동일 모델의 가격 추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둘째, 시도별·제조 제품 회사별·품목 유형별 구매 신청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한수원 내부 정관 등 대외투자 관련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 절차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 관련하여 내부 규정 현황 및 관련 조문, 조문별 준수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긴급하게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날 아시다시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또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300여 명의 노동자, 우리 한국인들 구금 사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의 무장요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1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경제·통상 부문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끌려가는 모습이 참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세판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오늘은 또 ‘한국과는 매우 좋은 관계다’ 이렇게 번복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말씀 그냥 하세요, 계속.

○박성민 위원 첫째, 산업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내사 단계를 했다고 하니까—차단할 조짐은 없었는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 대통령실과 산업부, 외교부가 미국 정부와 어떤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또 양국 정상에게는 어떤 보고를 드렸는지, 대책 마련은 했는지.

세 번째,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협상에 관한 이면계약은 없었는지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상호관세 소송에서 질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도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2심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부분에서 행정명령이 권한 밖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0월 14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무효라고 판결이 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보면 자화자찬 일색인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미국하고 상호관세 소송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기타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4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확산과 함께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과제가 바로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와 활용 문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시점 이후 교체가 필요하며 분리된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여전히 사용후 배터리를 대부분 폐기물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복수의 법률이 중복 적용되면서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이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도적 공백과 규제의 중복으로 산업화를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흐름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25년 약 90억 달러에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서 2030년에는 약 3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시장 역시 2024년 1조 원에서 2030년 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거대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과 활용 촉진에 대한 시책 수립, 둘째 사용후 배터리 취득·판매·활용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셋째 공정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투명한 거래환경을 마련하고 운송·보관 사업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검사와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 장치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제·금융 지원,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기업과 산업체가 직접 신청·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상생의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원재료에 대해서 전기료, 운송비, 용수비 등 에너지·물류 비용도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양측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현재는 편법적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의 안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요구하면 중소기업은 거래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에 의한 예외는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인 연동제 약정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 유형을 명확히 열거하고자 합니다. 동일 계약을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쪼개기 계약, 연동제 미적용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피행위 등을 명시하여 제도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관행을 법률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연동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탁기업의 정당한 권리 요구가 보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방어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 최고 조선산업 도시 경남 거제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이자 그간 세계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통해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온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2008년 국내 수출액 비중 1위 산업이 조선산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총수출액이 4224억 달러였던 시절 조선산업 수출액이 432억 달러였습니다. 국내 총수출액의 10% 이상을 조선산업이 책임지고 있었고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4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수출과 고용, 지역경제를 동시에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유가 하락 등으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발주를 줄이면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조선산업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014년 20만 명 이상이었던 조선산업 종사자들은 2017년 10만 명 정도로 줄었고 수만 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숙련된 근로자들은 조선 배후도시를 떠나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었고 협력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배후도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글로벌 조선산업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를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은 미미했고 국회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내 조선 3사를 필두로 한 조선사들만이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각자도생하며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구두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서 조선산업에 막대한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조선사들의 합병과 정부의 정책 지원, 저렴한 인건비,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업 재건 전략 추진의 하나로 국립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선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다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조선업은 전략카드이자 큰 지렛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자국 조선업의 재건 과정에서 우리 조선산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산업을 단순히 협상 과정 지렛대로써만 활용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문제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비롯한 군함 확충 사업에 우리 조선사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일본이 국립조선소를 발판으로 이 틈을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 없이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술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내국인 숙련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안정적 인력 기반 확충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숙련된 기술인력은 현장을 떠나고 청년층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조선업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선산업에 의존하는 배후도시들의 상권 붕괴는 계속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성과도 잠시뿐이고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선산업의 미래와 영속성은 우수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가 인력 육성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조선산업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미 해군 MRO 사업 수주, 중국과 일본의 국가 주도 조선업 육성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고용·기술·통상,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아우르는 핵심산업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R&D 투자 확대, 친환경·스마트 조선기술 지원,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통한 내국인 인력 확보방안 마련,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등 조선산업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좌표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조선

산업 지원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세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5항 및 제14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세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중요한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 탈취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건은 60건이며 중기부가 조사한 기술 침해 사건은 300여 건 그리고 기업당 평균 손실액이 18억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승소율은 33%, 인정되는 손해액도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로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를 돋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피해기업의 일부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첫째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기술평가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둘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셋째 중기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영업 비밀은 법원이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2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5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의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소상공인 수는 약 765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기준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정하다 보니 정책 수혜를 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

용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그러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의의 기준을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서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중견기업을 일률적으로 벤처기업에 포함할 경우 자산 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위원님들 단말기에 올라가 있는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업 및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광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성이 부족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며 한전의

재정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입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방사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 주기 계획, 협의체·지원제도, 전담기관 근거 등을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의 제정으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실증·인증·사업화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흘어진 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원자력 진흥법과의 정합성, 방사성산업·방사선사업자의 범위 등 법체계와 운영 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 현행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고 한전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유사 제도인 구역전기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송재봉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은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한정할 것인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확장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자의 유형 분류 및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과 관련해 산업부가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할 것인지 국토부·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분야별로 소관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허성무 의원, 서천호 의원, 이철규 의원, 박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와 그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폐지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며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부지·설비 재활용과 대체산업의 육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석탄발전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일관성을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기금의 신설과 재정 영향,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관계 등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입니다.

이종배·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해서 수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정부의 수소생태계 조성 추진에 따라 수소의 수요 및 관련 사업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는 점, 국내 수소 분야 현황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제정안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정하여 각종 지원시책 및 규제완화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인력 확보 및 양성, 기술개발, 해외 진출 및 혁신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 규제특례, 임시허가 및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해당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촉진하며 연관 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발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제정안은 충청권 지역 중심의 맞춤형 금융 지원체계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 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연구·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지리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청권의 산업 개발 및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동 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목적, 적정 수준의 재정통제 절차 및 수단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기금을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자본금 출자, 임원의 임기 등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관련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 침해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상웅 의원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의 법정 최소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기술 개발, 공동판매 등 본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협동조합이 영세화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뿌리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관련 시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과 친환경산업법 등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타 부처 소관의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정책들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 설계와 부처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정책 연계에 대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손해 배상청구권과 배상금의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종민 의원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등 제삼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대표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왕진 의원안은 모태펀드의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해당연도 회수재원 투자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태펀드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위상 의원안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점가 상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매집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맹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배 이내의 가산금을 더하여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유사 취지의 법률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안 계시면 우리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1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1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97항까지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 양당 간사와 협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이것만 해 놓고요.

198. 현안질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특허청 소관

(14시4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98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합시다. 그러면 잠시……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정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지난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타협 협정문 원본 공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위원장님 중재로 23일이었습니까, 26일이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받자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고받자 했습니다. 오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자부 관련된 보고가 일체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간사 간 협의 중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APEC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민주당……

○박성민 위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우리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와서 장관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저희들의 강력한 자료제출 요구에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회의가 마무리됐었는데요 이것 또 APEC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언론에 내용이 사실상 공개되다시피 했고 이것을 그때까지 또 미룬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야기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납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 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전체 회의 때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차질이라든가 장애가 있을까 봐 이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자 하고 뒤로 미뤄 놓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잠시 전 김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다시 APEC 이후에 보고를 받자라고

하는 논의가 두 분 간사 사이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걸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고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현안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들이 있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산업자원부장관님 또 한수원 사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원본을 제출하고 나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김원이 간사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회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김정호 위원** 그것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런데 APEC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걸 어디서 들고 와서……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자료제출 전체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전체회의 의결이고 말고 간에요……

○**김정호 위원** 뭘 말고 간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의 그렇게 회의를 방해해서 되겠어요?

○**위원장 이철규**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김정호 위원** 왜 합리적으로 안 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여기가 공식……

○**김정호 위원** 하고 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계세요. 발언 중단하세요.

여기가 공개회의인데 여기서 있지도 않은 말을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이렇게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 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위원장이야말로 말 그만하세요. 누가 괴담을 만들어요?

○**위원장 이철규** APEC 이후에 보고받자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발언하세요.

○**김정호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라고 했고……

○**위원장 이철규** 간접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말로 국회에서, 공식회의 석상에서 괴담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 그게 무슨 괴담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어디……

○**김정호 위원** 자격도 없으면서 말이야.

○**위원장 이철규** 뭐라고요?

○**구자근 위원** 뭔 소리 하는 거야!

○**김정호 위원** 사퇴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사퇴하시라는 거예요?

○**김정호 위원** 그렇게 산자위 활동에 대해서 방해할 것 같으면 사퇴하세요.

- 위원장 이철규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 박성민 위원 뭘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정호 위원님, 의원 사퇴하세요!
- 김원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 김정호 위원 참고 있으니까……
- 구자근 위원 아니, 인신공격이시잖아요, 그것은.
- 김정호 위원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합의했던 사항도 번복하고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 박성민 위원 아니, 뭘 사퇴하라고……
- 김원이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박성민 위원 김원이 간사하고 나하고 APEC 이후에 하자는 이야기 한마디라도 있었어요?
- 김원이 위원 그건 안 했는데 그것은 잘못 들으셨을 수 있잖아요.
-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어디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 김원이 위원 ‘의원 사퇴하세요’ 그러면 됩니까?
- 김정호 위원 말꼬리 잡지 말고, 그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밝힙시다.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것.
- 박성민 위원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뭘 사퇴하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야?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정회가 아니라, 잠깐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위원 합리적인 발언을 좀 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불합리하게 운영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기 오늘 생중계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왜 또 그렇게 키우십니까, 정리되는 판인데?
- 위원장 이철규 아니, 조용히 계세요, 간사님. 정리하고 있잖아요.
- 박성민 위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 이철규 개별 의원 한 사람이 누구의 자격을 있다 없다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공식적 발언을 할 때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할 수 있는 말을 구분해 가지고 절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원회를 해 오면서 특정 위원회처럼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나운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체코 원전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 또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고받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원장인 저에게 이 보고를 APEC 이후까지 미루자고 요청을 하거나 또 말씀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늘상 이렇게 근거 없는 문제를 제

기해 놓고 무엇인가 여기에서 의혹이 있는양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철규 위원장님, 신상발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사과하신답니다.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 이철규 예, 말씀을 하세요.

○김정호 위원 아까 회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특히 이철규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다소 격앙돼서 그렇게 지나친 언급을 했다는 점 후회하고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무튼 지난번 회의 때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신청이 있었고 저도 마무리 발언까지 해 가지고 꼭 그것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위해서 확인하셔야 되겠다, 적어도 비공개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짐받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언급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서로 말꼬리 잡고 안 했으면 좋겠고 적절하게 동료 위원에 대한 존중과 그런 자세가, 저부터 이번 계기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도 회의를 좀 여야 간에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김원이 간사는 나보고 자꾸 이야기하라는데 나는 진심이 아닌 줄 알지요? 저는 전혀 그런 악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자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래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비교적 정파적 관계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국민들 보시기에 불쌍사나운 일 없이 잘 진행돼 왔습니다. 이곳은 산업정책 그다음에 중소기업정책, 지식재산권 등 사실상 정치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정파적 관계와는 떨어져 있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근거 없는 발언이라든가 또는 상대 당 또 상대 위원의 인격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때는 각자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도 사회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여나 야나 기울어진 진행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자부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토론하고 대안을 마

련하는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이 간사께서 안건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돼야 되니까.....

○**김원이 위원** 먼저 다른 거 처리하고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철규** 아마 지금 빨리 안 하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현안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오늘 보고 없는 걸로.....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됐습니다.

중기부장관도 현안보고 하실 것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특허청도?

○**특허청장 김완기** 예.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석해 있으니까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잠시 이석을 양해한 차관들께서도 지금은 자리에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는 5분으로 하고 주질의 종료 후에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보충질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김원이 위원**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서왕진 위원님 오셔서 의결정족수 되나요?

잠시 현안질의를 중단하고 일부 추가할 안건이 있어서 이 안건 상정부터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변경 및 상정의 건

(16시11분)

○**위원장 이철규**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99항부터 제203항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제200항, 제201항, 제202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20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201.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20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6)

(16시12분)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99항부터 제203항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된 추가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99항부터 제203항까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8. 현안질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특허청 소관

(16시13분)

○위원장 이철규 이어서 현안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7분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5분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김원이 위원 장관님,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계약 협정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

고 있고 어제 서왕진 위원님께서 또 새롭게 찾아내신 사실관계들이 MBC나 한겨레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봤습니다.

○**김원이 위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에 조사들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 생각에는 다음다음 주 정도를……

○**김원이 위원** 국회에 보고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적절한 자리가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꼭 국회에 보고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술사용료로 2400억, 용역·물품 구매 등으로 9000억 그리고 이해되지 않게 지역을 분할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웨스팅하우스가, 중동·아프리카 등은 한전이, 지역을 분할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이 50년간 지속된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서왕진 위원님께서 추적해서 MBC가 보도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50년이 지난 뒤에도 해지 또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WEC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매국 계약을 넘어서 노예 종신 계약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자력 업계 내에서도 불공정 매국 계약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협정에 대한 재계약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되면, 즉 한미 간에 원자력 협력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이런 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 협상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은 두 협상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베이스에 따른 계약입니다. 두 파트 간에 서로 어떤 이익이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협상을 다시 재추진할 의향은, 의지는 충분히 있는 거지요? 물론 기업 간의 논의가 우선이겠지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협정을 주도한 한수원의 임원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황주호 사장님이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지금 현직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황주호 사장 임기가 끝난, 전 정부에 임용된 황주호 사장이 계속 지금 이 중요한 협상을 이어 간다는 게 저는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새 사장님의 임명되는 게 바람

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 정부에서 새로운 한수원 사장님 모셔서 내용들을 계속 풀로업(follow-up)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원이 위원** 공모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사실상 유임할 생각은 없고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고 있고 곧 있으면 공모가 이어질 계획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황주호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지위나 역할, 임무 수행이 더 이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사장 직에.....

○**김원이 위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황주호 사장님 뒤에 계시지요?

이럴 때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 한수원의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원활한 정책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주호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퇴 의지를 갖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사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스스로 적절한 시기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른바 조인트벤처(JV)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JV에서 사실상 한미 원전 수출 문제라든가 유럽의 어떤 새로운 진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황주호 사장님이 지금 저렇게 어정뜨게, 역할도 못 하고 임무도 사실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정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공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공모 절차가 순리에 맞게 조속히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듣기에 지금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의 적절한 개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이 웨스팅하우스 건이라든지 체코 건을 보면서.....

○**김원이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2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 산업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업무 범위가 정해지

는지가, 제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차제에 관련되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독립성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 개입이 제한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이고 원전이라면 이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이고 우리 핵심기술, 전략기술의 문제이고 안보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절한 정부 부처의 개입과 관리감독 기능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저희 국회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정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요.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 매국 협정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한전·한수원 비공개 이사회에서 반대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견이 묵살되고, 즉 국익을 위한 의견들이 묵살되고 이런 매국 종신 노예 계약이 체결된 과정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내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지난 9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우리도 지난 7월 말에 관세협상을 하면서 15%로 낮추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서로도 약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일본처럼 발표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조지아주의 우리나라 근로자들 300여 명이 불법체류로 구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관세협상, 정상회담 뭐 하려 했느냐, 가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협상 할 때 또는 정상회담 할 때 주요 의제가 자동차가 제일 큰 주요 의제였고 그다음에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느냐,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수치로 명확한 것이 자동차 관세 15% 인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

무런 추가적인 조치 없이 그대로 25% 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직 미국과의 협상이, 사실 실무자들도 지금 현재 가서 협상 중인데 아직 협상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서 협상을 해야 됐는가 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500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서 용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박형수 위원** 아니, 협상이 언제 마무리되는데 아무런 기한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약속한 15%가 아니라 25%를 낼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게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여기서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일본 정부가 15% 관세 이걸 행정명령 서명하기 전에 쌀 수입쿼터 내에서 미국 쌀을 75% 구매하겠다, 그다음에 연간 80억 달러의 옥수수, 대두 등등 농수산물을 구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 15%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면합의로 지금 이걸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농산물 관련해서 쌀 관련 그런 내용은 이면합의는 없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본의 예를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자동차 15% 행정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농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추가 개방 이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통상 당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지난번 관세협상 그리고 양국 정상회담의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말씀하신 쌀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은 5500억 불이라는 이 돈을 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협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박형수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15% 자동차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는 식으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지아주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현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두 번째는 우리 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이미 미국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지난번 관세협상 또는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짚었더라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장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선 당사자분, 가족분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외교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러트닉 상무부장관한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며칠 동안 총력을 다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돼서 일단은 가 계신 분들이 무사하게 귀환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마스가 등 우리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또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러트닉 장관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서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그런 멘트를 했던 것으로 저는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차제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나 해외투자를 할 때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비자 문제 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산업부장관이 좀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를 하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실 텐데 지금 한 얘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대답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제일.....

○**박형수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정리해 주시고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현안질의 때 ‘체코 원전 수출 신청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했느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승인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거의 끝났다’ 이렇게 언급하셨지요? 기억 안 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정확하게, 에너지부가……

○**김정호 위원**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뭐가 안 된 거네요?’ 반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정확하게……

○**김정호 위원** 아직 안 된 것은 뭡니까? 끝난 것은 뭐고 안 끝난 것은 뭡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어느 사안에 대해서 끝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 신청서를 미국 에너지부에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 에너지부가 수출통제(CFR Part 810)에 의해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원전기술에 대한 해외 이전이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끝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끝났다’, 제 시간 다 뺏어 먹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지금 그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별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거의 끝났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는 거네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았는데요. 아직 안 된 게 뭡니까? 오늘 제 질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수출통제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때 아직 안 끝났다고 답을 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때는 저희가 남겨 놓고 있는 게……

○**김정호 위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것은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글쎄요, 당장 이번 주 안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UAE 바라카 원전 때도 이 수출통제 문제가, 그때는 한전이었지요.

한전 김동철 사장님!

마이크 좀 줘 보시지요.

그때 이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 승인받는 데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1년 걸렸습니다, 1년.

황주호 사장님, 거의 끝났다고 했지만 현재 미국 에너지부가 비밀국가 지정 관련해서 지금 이 건을 홀딩하고 있고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수원과 우리 국내 원전기업들 간의 하도급계약,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한전연료나 건설사들하고 하도급계약 진행 중입니까? 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 진행 중일 겁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 잘 모르신다. 그렇지요?

임기가 다 돼서 누가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게 다 끝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만일에 최종 계약이 완료됐다면 한시바삐 우리 국내 원전기업들이 준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회의도 하고 그런 하도급계약도 맺어서 각각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 분담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연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될지. 왜냐하면 만일 미국 에너지부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면 지연되지요. 또 하나가 10월 달이면 체코 총선이지요. 총선 결과에 대해서 혹시 현지 사정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파악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그때 가 봐야 알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정호 위원** 아노 제1야당이 지금 35% 정도의 지지율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아노의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체코 현지에서 60% 조달해야 된다, 현지 인력도 우선 채용해야 된다, 이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관찰시키기를 요구한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제가 아노당 두 번째 분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임기가 다 됐으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없겠지요.

아무튼 황주호 사장님께서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벤처 협작기업에 서명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만났습니까, 웨스팅하우스 당사자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서명하러 간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별로 성과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요. 그것을 누가 임기 다 된 사람하고 논의를 하고 또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제가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절차 좋아하시고 법령 좋아하시는데 양심이 있거든, 그만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이것은 많이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많이 해 먹었다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해 먹었다는 것은 좀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겸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정리하시고요.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위원이라 하더라도 해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김정호 위원** 발언권 취하고 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황주호 사장,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회의 진행하시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특권인지……

○**위원장 이철규** 황주호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우선 먼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사장이 대표자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책임자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답변을 하는데 알고 있다, 뭐 한다 하는 답변은 이 질의응답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같이 보입니다. 계약이 됐으면 됐다, 안 됐다라고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잠시 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해 먹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심경에 대해서 말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일단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체코하고의 계약은 완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통제 관련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절차를 점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다른 말씀 더 하실 것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여간 마지막 임기를 다하는 날, 그다음에 퇴임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국회가 아무리 여야가, 정부가 바뀌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 먹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황주호 사장님은 그에 대해서 떠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저는 야당 위원으로서 황주호 사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품격 차원에서도 김정호 위원께서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 산하기관의 책임자들께서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김정관 장관님, 아까 답변하셨던 일본하고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련해서 일본이 각서에 서명한 내용 보면 미국에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되지요. 이 용도를 미국이 완전히 결정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일본이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인 관세를 매기기로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일각에서는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서면으로 약속을 안 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장관님 생각에는 서면 약정을 빨리하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익에 어떻게 하면 더 최종적으로 맞게 협상을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서면 약속하는 것은 우리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처럼 자동차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투자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서면 약속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신속하게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주장하고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구금된 부분 관련해서 언론에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전세기로 탑승해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가 있는데 장관님이 판단하시기로도 그런 일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당초에는 10일이었는데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무부장관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시는데요. 하여간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언론을 보면 이게 현대차나 LG엔솔이 아니라 여기의 하청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건축·설비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냈다가 구금됐다라고 압수수색영장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파악하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때 국내 기계를 사용했고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더라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국내 기계를 미국에 납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설비할 때 그냥 시멘트만 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계도 갖다 놓고 설치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배전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기계를 실제로 운영하기 전까지 보정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업체 직원들이 해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한규 위원**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미국 하도급을 받는 건설회사들이 신속하게 우리 기업들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응하기도 어렵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외에서 짓는 공장에 우리나라 전문직 기술자들이 가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지금도 한 13개 주에 우리나라 공장들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들은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한규 위원**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면 2020년 또 작년 미국에서 이게 이미 문제가 돼 갖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미국에서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정부에도 아니면 그 전 정부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산업부가 그냥 외교부에 맡겨 놓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무슨 노력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가 7월 달에도 관련 업체를 일단 모아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하라는, 일단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고요.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미국 비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ESTA라는 편한 과정을 가지고, 원래는 이런 활동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비자를 받아서 간 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투자나 공장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비자를 허용해 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미국 측의 이슈도 있

고 우리 기업들의 일종의 관행들, 두 가지 같이 겹쳐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미리미리 미국 측에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여겨 왔던 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미국의 비자 관련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7월 달에, 5월 달에 기업들 한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불러서 회의는 했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엄격한 비자정책을 취할 것 같으면 지난 정부,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 있을 때 투자약정을 하면서 같이 이런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라는 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구금된 직원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갔을 텐데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관행 때문에 우리가 편하고자 이렇게 직원들을 불법적인, 미국 기준으로 보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해서 일하도록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자부도 이런 주의만 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미국 정책이 이러니까 주의하세요’라고 하면 더 드러나지 않게 할 뿐이지 해결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산자부도 문제인 것 같고.

야당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13개 주에 있는, 지금 보니까 한 수십 개의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미국하고 비자 문제는 바로 해결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빨리 공장 현황들 다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중심으로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어떤 공백 상태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비자 문제 관련해서도 와서 보니까 저희 산업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하는 정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동안 해 왔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간 돼서 죄송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자부가 지난 정부에도,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산자부 직원들은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들 목록 다 갖고 다니면서 미국 관료들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장에 투자하고 건설하고 있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 그런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점검했어야지, 국내에 들어온 인바운드 투자만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하는 투자도 산자부가 챙기고 있었다고요. 챙기고 있었는데 이 일을 안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지 딱 11일 만에 동맹국인 한국의 근로자들을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쇠사슬로 죄수 다루듯이 하면서 이렇게 극한의 방법으로 동맹국을 모독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위상이 추락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700조 원이나 갖다 펴붓고 하는 대미 항복 투자에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한국 내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여러 가지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극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한미 간의 새로운 외교 참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중간 시점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격을 모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석방이 아닙니다. 우리 근로자들 인격 모독을 하고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국외 추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쿼터 할당과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등 비자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된다. 조만간 한국에 돌아올 국민들에 대한, 이번에 탄압을 받은 그분들의 미국 재입국, 이게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문제 등 실질적인 외교협상을 본격적으로 펴 나가야 된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등 이런 법인들은 22년도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외교부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이런 사실을 직접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때는 장관이 아니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때는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앤드류 킴이나 올 때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웅 위원** 어쨌든 지금 산업부가, 취업비자 8만 5000명으로 묶여 있다는 그것은 미국 내 사정이고 우리가 700조 원이나 투자하는 마당에 협상조건에 취업비자 쿼터 문제나 취업비자 인원 확대 문제를 우리 한국은 특별히 적용해 줘야만 한다는 사전설명이 반드시 옵션으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뒤통수 맞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명·변명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새 정부가 보여 줄 모습은 아니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짜고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산자부장관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에너지가 지금 환경·기후 분야로 떠넘겨져서 산자부에서 그 역할이 사라져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운영 정책이나 미래를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막중한 책임

감도 느끼고 있고요. 이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도 누구보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잠깐만요.

산업형 에너지 과제를 환경부 산하에서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 산업과 기술 연계 전략은 누가 책임지고 조정합니까? 에너지하고 산업기술, 이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것을 환경부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 산자부는 여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을 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손을 뗄 때는 건 아니고요. 산업적인 관련 부분들은 계속 산업부가 관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관련 부처하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원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천연자원, LNG를 비롯한 석유 같은 그런 부분은 일단 산업부에서 계속 맡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박상웅 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오랫동안 고심한 속내가 지금 완전히 정부기구 개편에 드러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주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후와 환경 쪽에 이것을 묶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원전이라든지 전통적인 우리의 전력기반은 이제 중점사항에서 도외시되는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정책을 환경부에 떠넘기는 그러한 무책임한 장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산업계의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에 있으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재생에너지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 에너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웅 위원** 너무 낭만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기후, 다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에너지를 가져가서 우리의 에너지정책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일은 국가 미래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장관이 앞장서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정부의 안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요. 국회로 일단, 국회

에서 논의 과정에 있는데……

- 박상웅 위원** 국회에서 아직 통과된 것 아니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 의견을 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서왕진 위원님인데 잠깐 전에 장관님, 이 정부조직법 정부조직 개편안에 장관님은 산업부의 의견을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까? 에너지 분야를 기후환경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 장관님은 산업부의 책임자로서 의견을 개진하신 바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위원** 황주호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저쪽 스텐드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번 1월 달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의 협약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그것도 종신 협약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한전 또 한수원과 같은 우리 공기업·공공기관들이 국내외 기업들과 맺는 기술 관련 협정 중에 이런 식으로 수십 년도 아니고 사실상 종신 협정, 영구 협정 맺은 사례가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왕진 위원** 황 사장님,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수출 협정인데 우선 국내의 신한울 3·4호기, APR1400 이것도 웨스팅하우스 기술하고 연관이 돼 있지요. 여기는 기술료나 역무 협정은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 서왕진 위원** 이건 아예 적용이 안 됩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 서왕진 위원** 국내에 건설할 때는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군요.

우선 이렇게 이 협정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평가가 매우 불공정한 종신 협정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것이 해지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협정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해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50년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APR이라는 모델은 이미 열두 기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모델을 개발해서 열두 기나 열다섯 기를 짓게 되면 그다음에 다음 모델로 넘어갑니다. 다음 모델로 넘어갈 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계약은, 이런 협정은 전혀 상관이 없

습니다.

○서왕진 위원 우선 제가 본 바로는 이 협정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도 매우 불공정한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협정 해지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요약하자면 협정이 정상 만료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원천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또 한국형 원전 수출할 수 있는 기술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지재권 분쟁을 해 온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에 징벌을 내린 거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런 내용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술의 기술 자립 또 독자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열티를 얼마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박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족쇄를 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대형 신형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또 무슨 기술 자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에 있어서의 원천기술이라는 것은 국가안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원천을 잡은 쪽에서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 사장님께서는 비록 지금 APR1400 같은 경우는 이런 한계가 있지만 현재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에서는 그런 것을 벗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제대로 진전이 되는지는 한 번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요.

이번 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지금 SMR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부터 독립된 자립적인 원천기술로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협정을 통해서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종의 허들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황 사장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핵심 전문가시고 또 가장 중요한 기관의 최고책임자까지 역임하고 계신데 이런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허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배 연구자나 원전 산업 관계자들에게 협정 결과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 안 드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허들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저희가 새롭게 뚫어나가야 될 길의 방향을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SMR도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웨스팅하우스하고는 전혀 다른 모형이

고 그것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특히 회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아주 별도의 특별 팀을 운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시간이 끝나서 더 추가질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번 협정 내용 안에 SMR에 대해서도 아주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들을 협약을 해 놨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개발 자체가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정말 돼 있다면 제대로 한번 소개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 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질의가 거의 산업부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기부장관, 특허청장 등 산하기관장들이 여기에 배석하는 것이 사실상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업무에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중기부 소관 그다음에 특허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순서를 당겨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안 되지, 그것은.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성무 위원 다 일정이 있는데 순서대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철규 일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지금 중기부하고 특허청에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을 먼저 당겨서 하고 돌아가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도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 제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질의 할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서가 오세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세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도 그렇게 늦지 않는데 몇 분 좀 양해를, 한 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의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중기부장관하고 특허청장, 산하기관 전부 다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중기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이 경영 효율화, 그런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지요? 그렇지요? 다만 본 위원은 중기부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해 왔습니다. 첫째는 높은 초기 투자비이고 그다음에 업종별 현실 반영이 좀 부족하다 이 점을 얘기했고요. 특히 우리가 디지털 전환 하면 외식업의 키오스크라든지 서빙, 테이블오더 이런 기기에 한정돼 있는데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 로드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에 114억.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AI 도우미 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신규 편성됐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것 편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예산을 뛰어넘어서 소상공인 경영 실적에 도움되는 실행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일단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보니까 디지털 기기 관련된 지원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활용과 관련된 부분의 능력을 좀 배양시키는 게 좋아보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이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화 지원하고요, 소상공인 민원상담 AI 도우미를 만들어서 실제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소비 데이터 분석하는 쪽, 이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한정된 재원도 어려움이 있는데 스마트 상점 예산이 375억에서 349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365 빅데이터 플랫폼 있지요. 그게 23억 정도에서 21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요는 많고 국고보조율 상향 요구도 있는데 줄었고, 중기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추가 예산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일부 유지보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현재 국세청 데이터 추계 연계도 있고 협의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도와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의 AI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AI 기반의 창업 컨설팅, 상품 분석, 마케팅 판로 지원, 솔루션 보급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그런 정보 분석이 적다 보니까, 빅데이터 구축이 돼서 상권이 분석이 돼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진입하는 분들에 대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유지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중기부가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해서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의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적극 동의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중기부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800만이 넘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장을 위하고 합리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내년에 꼭 증액이 필요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세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사실 중기부한테 먼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위원장님 덕분에 먼저 질의하니까 중기부 사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 지역에 있는 VC나 액셀러레이터 텁스 관련된 기관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도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부탁 내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텁스 운영하거나 액셀러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일지 오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텁스가 뭔가 하나가 더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지금 딥테크 텁스도 있고 글로벌 트랙도 생겼고 한 2년 전에 딥테크는 분화됐네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한 분 새로 오시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텁스 제도가 복잡해지고 텁스 제도가 복잡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나 창업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심사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고 요건이 복잡해지니까 브로커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일종의 관리비용이나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은 동의를 하고 사실 딥테크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되고 글로벌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애초에 대안적으로 일반 텁스에서 아주 폭넓게 다 들어왔다가 일종의 2차 라운드나 3차 라운드 때 조금 더 딥테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고 그리고 뒤에 포스트팅스하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옆으로 분할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라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더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장관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후에 국감 하기 전에라도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 방하고도 상의해 주셔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산자부장관님한테 한 말씀드리면, 관련 협안이나 이런 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이 상정되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그냥 이 법에 대한 통과만을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보다 산자부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의 정책 수단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산업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산업정책 그리고 지역에 굉장히 부족한 자본이나 금융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정책적인 리더십을 산자부나 아니면 지역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솔직히 없습니다. 지역산업정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충청에서도 그렇고 부울경 지역의 동남권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뭔가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해 나가고는 싶지만 사실상은 늘 그냥 중앙부처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잘 안 되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은 제가 대안적으로 낸 것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산자부에서 같이 해 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에 특화된 산업정책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틀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고 지원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좀 산자부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었고 마침 저희도 5국3특 관련해서 규제, 재정, 인재, 금융, 이 전체적인 정책, 정부가 동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지역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충청권 관련 그 아이디어가 단순히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으니까 중기부장관님, 잠깐만 그거 말씀드렸던 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아까 말씀 주신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신설 안하고 주로 줄여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텁스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딥테크라든지 이런 단계로 잡고 있어서 현재 정리된 사항, 세부 사항들 의원실에 다시 한번 공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재봉 위원님이 잠시 중기부장관 상대로 질의하시겠다는데 중기부장관 상대 질의만 하시고 산업부장관 질의는 나중에 순서에 하십시오.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아닙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공공 배달앱 관련돼서, 아시는 것처럼 배달앱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배달앱의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문제로 인해서 소공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수수료 부담이 된다는 비중이 약 72.4% 정도 되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를 보면 개선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저는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액 대비 수수료율을 비교를 해 보니까 공공 배달앱 쪽과 사업을 하고 있는 땡겨요의 경우는 약 5.5% 정도 수수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배민이라든가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상생요금을 적용해도 상위 35%는 30%가 넘어가고 하위 20%도 21.5%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배가 넘는 부담을 현재 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민간 배달앱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요청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이것이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고 키우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되어 있는 건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공공 배달앱, 현재는 농림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중기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배달앱 전체에 대한 주무부처는 공정위라고……

○**송재봉 위원** 아니, 공공 배달앱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저는 농림부가 공공 배달앱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지난 번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호소하는 것은 자영업 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공 배달앱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중기부가 이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배달 플랫폼 포함해서 동반성장평가 및 이용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공공 배달앱 관련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송재봉 위원**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고 중기부 소관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공 배달앱과 관계…… 여기의 시장을 키워주면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무를 보면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일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농식품부이고 또 행안부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 그리고 실제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기부, 이 3개 부처는 최소한 협력체계를 갖춰서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하는 거 보면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쿠폰을 지원한다거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의 틀을 만들고 부처 간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각 부처가 역할을 나눠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지금 배달앱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공공 배달앱 부분은 한번 현황들 다시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보면 지자체에 따라서,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정도의 시장을 공공 배달앱이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 성과가 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거는 들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지자체의 홍보비라든가 또는 리워드 같은 게 있으면 올라가요, 확실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그래서 공공 배달앱의 지자체별 예산과 그다음에 배달앱을 운영할 수 있는 개발 조직들과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황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재봉 위원** 현황 파악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공 배달앱이 일정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배달앱의 그런 횡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중기부장관님, 특히 청장님과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배석자들께서는 이석을 허용합니다. 정리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 돌아가셔서 빨리 기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산자부장관님, 최근 미국의 2심 법원에서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미국의 2심 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미국의 정통한 법조인들 이야기에 의하면 대법원 가도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헌판결이 나면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지요.

그러면 산자부는 그 위헌판결이 났을 때의 시나리오 아니면 합헌판결이 났을 때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헌판결이 났을 때의 시나리오가 지금 사실상 폐기된거나 마찬가지인 한미 FTA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측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적용해서 또 다른 관세를 제기할 건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FTA 관련해서는 현재도 FTA는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라는 게 최혜국 관세, MFN 플러스 관세로 돼 있어서 우리는 0 플러스 15가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더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FTA는 현재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들은 위헌이 나올 거라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나올 거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갈래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여서 그런 전제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산자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밖으로 이렇게 공개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갑자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 그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들도 아무도 몰랐고 그런데 장관님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사실 그때 언론 보고 알고……

○**허성무 위원** 언론 보고 알았지요? 보고된 바가 없지요, 산자부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저한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한수원 사장님, 저쪽으로 가 주시지요.

시간 잠깐만 껴 주시고요.

그 보고가 나오게 되기 직전에 비밀협약과 관련돼서 엄청난 질타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거 나오면서 국민들은 한수원이 새로 뭘가 히든카드가 있었구나 이런 오해를 했는데 실제 가셔 가지고 웨스팅하우스 만나지도 못했지요, 조인트벤처 관련해서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이야기는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해 오고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때 가서 그때 우리는 마치 가면 조인트벤처가 다 결성되고 뭘가 발표가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 아무 발표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허성무 위원** 언론 보도 자료는 한수원이 다 뿐인 거 아닙니까? 누가 뿐렸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한수원 말고는 알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 비밀협약에 대한 국민적 질타나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이야기를 했던 거고 상식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 비밀협약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조인트벤처를 한수원에 맺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지금 세계 원자력산업의 동향을 잘 보시면……

○**허성무 위원** 그 동향은 저희들도 다 듣고 알고 있고요. 수도 없이 저희들도 공부하고 보고서도 보고 있고 한수원의 발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잔뜩 기대감을 부풀렸는데 조인트벤처를 결성하는 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마치 발표될 것처럼,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보도가 잔뜩 나왔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거는 저희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의도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 계획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기자들이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결과는 초라했다,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 규정과 절차 일체를 달라 했는데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 사업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사회 등 법률 및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얼마만큼 진행됐고 어떤 절차를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 회사 절차는 사내외 심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마치고 나게 되면 액수가 클 경우에는 정부의 예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타 심의 받고 나서 또 미국 정부의 CFIUS라고 해서 미국 투자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허성무 위원** 사장님,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지금 사내 심의 절차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사내 심의 절차도 못 들어갔는데 언론은 대대적인 보도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허성무 위원** 누가 의도했을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글쎄요……

○**허성무 위원** 국민들은 다 알겠지요, 누가 의도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좋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

장관님, 어쨌든 조지아에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사이에 공사 중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건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투자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위험 부담이 엄청 커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매뉴얼 같은 게 이미 있었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대처한다 그런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매뉴얼이 없지요?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기업들한테 안내도 하고 교육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준비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 다른 해외 진출 기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외교부와 노동부와 그리고 산자부가, 특히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매뉴얼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배포·교육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면 의원실로 보고도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건너뛰나? 그다음이 저인데.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이 장동혁 위원님하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다음이 곧바로 김종민 위원님, 다음입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9번이에요.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종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언주 위원 아니, 제가 9번이라니까, 9번.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위원장 이철규 바꾸고 바꿔 가지고 거기 나온 것하고 좀 달리 가요. 위원님들이 기준의 순서에서 뒤로 밀리는 건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12번이 아니고 9번이에요.

○김종민 위원 좋은데요. 위원장님, 오늘처럼 회의 진행을 복잡하게 하시면 힘듭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제가 국회의원 10년 하면서 이런 회의 진행은 처음 봤어요.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당사자 간에 순서를 바꿔 달라 해 가지고 당사자 간에 양해를 구하고 바꾼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고지를 해 줘야지요.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행정실에서 바로 알려 드려.

그런데 위원님들 순서는 자기 순서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요.

○김종민 위원 질의시간 바로 앞두고 중기부 보내야 된다고 순서 바꾸고 또 여기 목록에도 안 나오게 순서를 그냥.....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세요.

○김종민 위원 이것 벌금 물어야 돼, 벌금.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할 때 보너스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빨리 질의하십시오.

○이언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안 나오면서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에너지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가니까요. 그런데 좋은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환경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당장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패러다임의 시프트, 그러니까 기후 대전환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은 거의 신제국주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반대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진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전기차하고 전기버스 육성과 관련해서, 진통과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씨름을 해 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환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산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계속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지켜보고 문제의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자원 수입과 관련해서는 산자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LNG 수입을 하는 것은 산업통상부에서 하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중동산에 비해서 약간 비싸더라도 전략적으로 수입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전력하고 직결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G&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스 앤드 일렉트리셔티(Gas And Electricit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생기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거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게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우리가 투자 협상하면서 레버리지로 비자 문제를 언급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왜 지금 하필, 그렇지요? 우리 국회에서 볼 때는 왜 지금 하필 그리고 왜 이렇게 강하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유감스럽고 이렇게까지 난폭하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걸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안이했기 때문만인가, 하필 지금……

우리가 사인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세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유효성이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압박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건 뭐 아무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석방이 돼서 귀국을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자 문제나 이런 체포, 단속된 기록들, 레코드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빨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15%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도 전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챙겨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법 문제는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끝이 나야 돼요. 문제가 없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끝이 나고 미국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종결이 나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무마됐으니까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법제나 제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말 그런 우려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내용 여러 가지 부분 저도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무사하게 귀환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새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각 돌아오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전체적, 회사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투자에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저희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게 새로 문제를 푸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관세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 언론에 보면 쌀·소고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에서 쌀·소고기 개방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이 답변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논의는 있었지만 그것은 미국과 우리가 쌀·쇠고기 개방, 쌀은 없다, 쇠고기 개방도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양국 간에 어그리(agree) 된……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합의 말고 미국에서 완전 개방을 요구했느냐고요, 협상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요구는 했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입장은 어렵다고 답변을 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이걸 합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은 합의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미국은 던져 놓고 이건 아직 합의가 안 됐다, 또 재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하여간 그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다는 걸 잘 참고하시고 미국의

협상 당국이 이걸 합의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확인한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호관세가 지금 2심에서 위헌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이거 무효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아까 장관님 얘기는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법이든지 상호관세를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것 이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하여간 그런 방법이, 이게 위헌판결 난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일단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위헌판결이 나오고 또 입법도 공화당에서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으니까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다른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런 상호관세 수준이 아닌 다른 협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된 상호관세 합의가 아닌 다른 합의가 추진된다면 지금 우리가 700조 투자하기로 한 것,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관계없이 유효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건 저희들도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형태를 통해서 바로 관세 조치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원래 있었던 FTA 그게 일단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협정 맺은 것 있잖아요, 약속한 것. 이를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건 그때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분석 좀 해 보시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는데 700조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이다, 빅 픽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조지아주 관련해서 지금 양국 간에 합의된 게 자진 출국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들이 합의는 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어서, 지금도 이 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김종민 위원** 미국 언론에서는 강제 추방 아니면 재판, 둘 중의 하나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외무부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내용들이,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김종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강제 추방하고 자진 출국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혹시라도 강제 추방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자진 출국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우리 외무부 당국 통해서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 현재는 말씀이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정부 입장은 가 계신 종사자분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게, 그게 지금 최우선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민 위원** 그 목표는 좋은데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무슨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당장 이삼일,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보 관리나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관리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는 별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부가 같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부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과기부하고 산업부 간의 관계입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과기부, 정보통신부, 디지털경제부 이런 식의 부처가 새로 생긴 것은 디지털 트랜지션의 초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 있고 디지털이 새로 나왔는데 전통적인 산업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안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디지털경제부라는 것을 새로 만든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디지털 트랜지션 또 AI 트랜지션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AI와 디지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여전히 산업부이고 디지털경제부는 여전히 과기부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이게 기술R&D부가 아니에요, 지금 과기부가. 디지털경제산업부입니다. 디지털산업부예요. 그런데 디지털산업이 아주 부분적인 파셜(partial)이었으면 말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AI 없이 어떻게 산업 대전환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기술개발 또는 R&D를 전문으로 하는 과학기술 또 R&D 업무하고 디지털경제·디지털산업 업무와 지금 현재 산업 업무가 동떨어져 있는 것, 이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장관님이 한번 고민하셔서 발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이 가고요. 저희 부나름대로는 디지털·AI 전환 관련해서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조 AI 얼라이언스 총발대식이 한 1000여 명의 기업인들과 우리 관계자들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과기부는 AI 관련돼서 GPU라든지 우리 한국형 AI 모델을 만든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초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말씀하신 AI 전환 관련된, 산업에 적용시키고 제조 AI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가 담당을 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은 AI 관련된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다 과기부로 가 있어요. 실제로 과기부가 AI 관련해서는 중기부·산자부는 손대지 마라 이런 분위기예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현장에 엄청난 왜곡을 가져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입장과 안을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이것 갖고 공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처 개편 관련해서 환경부가 에너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니까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유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최근 있었던 지난 두 정부에서 전기요금의 추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언론의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향하고 탈석탄 정책도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시기인데 전기요금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판매단가는 오히려 감소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부터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습니다.

이호현 차관님, 에너지정책실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주원인은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당시에 종합적인 상황, 요인들이 맞물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글로벌 가스 위기에 따른 가스가격이 급등했었고요.

○**박지혜 위원** 연료비가 급등한 것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누적된 인상요인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두 시기 다 산업부가 전력가격·전력믹스 정책을 담당하고 전기요금 결정을 관여했던 시기인데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요금은 결국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이

냐의 문제에 따라 좌우되었지 어떤 부서가 담당했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강도가 어떠 했고와 사실 과거의 우리 경험은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주장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책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인데 장관님, 어떤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 가능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박지혜 위원**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국제원유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연료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원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기요금을 동결했던 시기에 한전의 적자가 급격히 확대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변동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국제유가의 변동성으로부터 국민의 부담을 더는 착한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저는 이것은 현재 전기 소비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래세대가 떠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생산과 관련한 비용을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으로 수요를 조정하는 그런 전력시장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기 때문에 구조적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것은 나쁜 적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다 보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지혜 위원** 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발전사업자가 제대로 부담하도록 하면 그만큼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요인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또 기후정책을 그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기후정책을 미루므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을 그 원인발생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주체가 고르게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는 동의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기후변화 대응도 산업경쟁력 강화의 하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산업경쟁력……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주 경쟁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산업용 전기가격이 더 높은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기후변화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떤 경쟁국들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다른 어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저는 산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와 관련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무리만 조금 하면……

○**위원장 이철규**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슬라이드가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저는 영원히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관님도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LCOE를 낮추고, 사실 지금 현재 LCOE 예측을 보면 2030년 이후에는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를 현실에 실현시키는 것이 사실은 산업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물론 보급정책은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더라도 이 LCOE 커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산업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후정책이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산업부가 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조금 전에 그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향후 5년이,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 점도 주무장관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입장이라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박지혜 위원** 기업 경쟁력과 단기적인 이해관계, 장기적인 이해관계 잘 고려해서 균형적인 의사결정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5년 뒤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0 감축목표 달성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님, 미국 조지아주 불법체류 단속사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역사상 처음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이번 단속으로 현대차와 LG, 양측에서 각각 몇 명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LG가 47명이고 현대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현대가 200명 정도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현대엔지니어링 쪽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아 위원 엔지니어링 쪽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인력들이 한국의 숙련되고 특수한 기술인력들로, 미국인들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그러면 향후에 비자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공장 설립이나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기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송환된다, 귀국한다는 보도가 일단 있기는 한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지금도 협상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언론에 보니까 남아서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인원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인원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 재판 관련해서 남겠다는 의사가 있는 부분은 파악을 못 하셨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남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비자제도의 문제라는 것은 거의, 장관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취업이 불가능한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전문인력이 파견되는 관행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반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H-1B, L-1, E-2 비자는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물량도 제한적이라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인력 파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비용을 내서 시간이 걸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ESTA, 잘 아시다시피 훨씬 더 편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암묵적으로 이용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L-1이나 E-2 비자나 이런 것은 미국 현지에 기업이 있는 경우 그 기업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취업비자가 나오지 이런 경우, 한국에서 파견 나가서 전문인력들이 가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H-1 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는 별도 트랙을 통해서 확보한 부분도 있

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저희가 활동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김동아 위원** 호주 말씀하셨는데 호주 특별협정을 통해서 별도 쿼터를 받았잖아요. 혹시 우리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쿼터를 받아 내기 위한 공식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그동안 FTA 이후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 왔었는데 이것을 정말 지금처럼 아주 심각하게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는 정도로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구체적인 문서나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적이 사실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김동아 위원** 보고받은 바는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데 현재 주무부처가 어디지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외교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측과 따로 협상하거나 한 내용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은 상무부도, 일단 미국 쪽의 단속 자체가 이민·세관 당국이다 보니까 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 저희가 연관되는 부처가 상무부니까……

○**김동아 위원** 결국 저희가 특별비자를 받거나 하려면 산업부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외교부나 저희, 그러니까 국무부·이민국 관련되는 부처다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향후 투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미국 측은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미 상무부에 이 이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심각한 자연이나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 측도 지금 다른 이슈와는 다르게 이번 이슈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특별비자를 받든지 쿼터를 받든지 배정을 받든지 제대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석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

고 안 그러면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그냥 끝을 내고……

○정진욱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위원장 이철규 추가·보충 질의들 안 하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우리가 해야 되지……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가·보충 하실 분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60조 규모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쇼트리스트에 올라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하고 방사청 같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부에도 여기서 협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난 8월 달에 캐나다 총리가 독일에 있는 경쟁업체에 방문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방산 수출은 사실상 GtoG 거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기본적으로 절충교역이 관건인데, 정부에서 지금 뭘 할지 대단히 고심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고심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말씀은……

○서일준 위원 산업부에서 직접 쟁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방사청하고 같이 면밀하게 쟁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그게 잠수함 3척에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산 수출사업을 기업에만 맡기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산업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오르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6파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하고 프랑스하고 스웨덴하고 독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까지 다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에 아마 우선……

○**서일준 위원** 올해 발주 절차 돌입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산 경험했던 부분도 많고 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서일준 위원** 그러면 이번 달, 지난 2일입니다. 폴란드에서 MSPO 열린 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우리 산업부 직원들 출장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전시회에는 제 기억으로는 산업부에서는 참석을 안하고 방사청에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 산자부에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장차관님이 못 가시면 최소한 국·과장님이라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번 일단……

○**서일준 위원** 이것을 방사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이런 부서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충교역은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 소관입니까? 산업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절충교역……

○**서일준 위원** GtoG 거래하면서 우리 국가 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캐나다에 60조 규모 수출을 한다면 기술이전이라든지 많잖아요. 이것을 방사청이나 외교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관련해서 산학협력 패키지라든지 무역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이전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서일준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가스테크(Gastech)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2023년에는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천연가스, LNG, 수소, 기후테크, 에너지AI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9월 9일부터, 내일부터 이태리 밀라노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바쁘신 것은 알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십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상을 관할하는 주무장관님은 이 내용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힘들게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방산 수출은 기본적으로 GtoG입니다. 정부 간의 거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정부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애로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직접 좀 챙겨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얼마 전에 한화오션 직접 가서 그 현장에도 가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부가 저를 포함해서 지금 각별히 캐나다·폴란드 건에 대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리고 KDDX 관련해 가지고 방산업체 선정 관련 공문 자료제출 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관님이 직접 챙겨서 보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체포·구금과 관련된 질의가 많아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가운데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숙련기술자, 미국의 현지 인력으로는 대체가 어려운 그런 인력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겪는 심리적인 충격은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귀·귀국 절차에 집중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기업체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이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꼭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재관 위원** 그리고 아까 새로 시작하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 현재의 매뉴얼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기업들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합동 TF를 좀 구성을 해서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그런 과정도 경험의 어떤…… 매뉴얼에서는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꼭 확보를 하셔서, 앞으로 유사 사례에 예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 주시는 데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오전에 산업단지 관련된 관계관과 미팅이 있었는데요.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부처 간의 협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공단이었는데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부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중기부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영역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특히 시도에서의 지방산업단지 부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현황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산업단지공단에서 활용하고 개척하기에는 또

기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 차원에서 산업부, 중기부 또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서 산업단지공단이 그 안에서의 협업 과정에서 할 때 사실 자원의 낭비라든지 또 과잉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또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공간들이 분양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결국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각 분야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요. 그런데 제조업 AI 전환과 관련돼서 가장 소중한 것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와 관련된 현지 근로자들, 현지 기업에서는 이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절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 구성원들과 기업 CEO들이 AI가 갖는 효력·효과, 그러니까 불량률과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이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기술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인식의 전환에 대한 교육도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황주호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부와 공기업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각도에 따라 다르고 또 나라 간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신뢰가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PPT 띄워 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주호 사장님, 지난 8월 19일에 산자중기 전체회의 때 말씀하셨지요? 폴란드에서 사업 철수한 이유가 ‘폴란드 새 정부가 안 하겠다고 해서 철수했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짧게 ‘예, 아니요’로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조금 길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요, 길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우리 국민이 지금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폴란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던 정부 사업과 국영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새 정부가 안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에서 답변을 다르게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폴란드의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저희는 폴란드랑……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도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한국 측에 2호기 원전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코닌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8월 25일입니다—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투 트랙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아서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까요?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사유 보면 9월 4일에 한수원이 또 제출을 합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 기사를 보고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왜 폴란드 정부 생각하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한수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현지 언론 기사를 보고 사업 철수를 결정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언론 모니터링과 그리고 기타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없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저한테 나와서 답변한 날이 8월 19일인데 그날이 임기 만료일이시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임기 만료됐고,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엉뚱한 말씀 하시고 거짓말하시려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욱 위원 사퇴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장관님, 한수원 사장 임명을 서두르셔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현재 공모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군요.

황 사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RE100 산단과 관련해서 문신학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RE100 산단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기후에너지부로 에너지 관련된 조직이 옮겨 갑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에너지 거버넌스가 확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산업부와 앞으로 생기는 에너지부 간에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돼야 된다.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특히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저는 산업부 내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좀 활발한 인적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을 국정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RE100 산단 추진하는 데는 또 특별법 추진하는 데는 어떤 차질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부와 에너지부 간의 연관 관계가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 부처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정책협의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나가려고 양 부처 장관님들 간에 이미 협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정진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러한 차원에서 RE100 산업단지 쪽의 업무는 산업부가 주관해서 추진합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쪽과의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 부처 간 협력의 가장 제1과제가 RE100 산업단지가 될 것이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기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몇 번 나오셨어요? 인사청문회하고 해서 세 번째 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세 번째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장관님이 답변은 그래도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장관님이 여기서 답변만 하시고 보니까 주로 외국에 많이 나가 계시고 여기서 근무를 별로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지, 외국에 많이 나가셨지요? 지금 근무한 날, 근무한 기간 중에서 외국 나가 계신 게 더 많지요? 길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게…… 쟁겨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이행되는 것 같은 것 또는 답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바쁘면 전화로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극적이다, 미온적이다 이런 걸 위원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제가 꼭 쟁기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장관님도 오늘 답변하는 걸 제가 쭉 보니까 좀 미온적인 답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지아주 문제,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 분통 터지는 일인데요. 그러면 현대차와 LG엔솔 거기 공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거기는 누가 짓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논의되는……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런 걸 관리를 하셔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지금 22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 공장들은 또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이런 일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일단 같이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의 비자를 지금 전체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장이 안 지어지는 게 LG엔솔도 문제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종배 위원** 글쎄, 그것은 미국 측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기업체들 나가서 공장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 장관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위법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입법이요?

○**이종배 위원** 위법, 미국 법에 위반됐다는 걸 인정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법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종배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비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비자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또 외교부하고 협상하고 미국 상무부하고도 협상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제대로 잘 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하고 카운터파트인 상무부 소관은 아니고 국무부…… 일단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대미 투자…… 우리가 700조 대미 투자한다는 것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입장에서 미국 투자하는 것은……

○**이종배 위원** 제대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제대로 투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런 것을 미국에다 잘 설명하시고.

그 700조, 1500억 달러를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얘기할 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FDI, 우리 기업들의……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직접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이종배 위원** 그것 몇 개 회사가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아직 그 숫자 자체가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1500억 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주요 기업들의 숫자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걸 조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주요 큰 기업들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700조가 가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미국 관세 25% 그냥 계속 갑니까? 빨리 이것 정리를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우리가 3500억 불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이 같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빨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3500억 불과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될 이슈이지, 저희……

○**이종배 위원** 종합적으로 안 되더라도 자동차 문제라도 하세요. 일본은 됐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본처럼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에너지 문제, 정부조직 개편 방안 이것 문제가 심각한데 장관님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 기준에 이게 직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대응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나름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우리 산업과 유기적 연계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원칙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자꾸 원칙론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산업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에 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국무위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지아주 건설현장에서 총 475명이 체포·구금됐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의 대응인데, 사고 발생 이후 현황이나 대응사항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이번 사태의 원인이나 대응에 대해서 산자부에는 매뉴얼조차 없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은 앞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번 사태에 산업부, 외교부 등 소관 부처의 현황과 대응에 대한

문서제출 요구했으나 문서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 기업들한테 최초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산업부가 대한민국 산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기 대응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오늘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장관의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 외교부와 협의 시점과 산업부의 초기대응 시점을 상세히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그리고 대규모 인원 가지고 한국 기업 단속했는데 이 시기를 보면 한미 정상 끝난 지 10일째입니다. 이 시점에 굳이 단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미국의 이민국이라는, 단속국이라는 데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게 관례적인, 용인됐던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계속 경고 사인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5% 협상 보면 결국 일본보다 2.5% 더 협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동차 관세 아직도 25%,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철강은 아직도 50% 관세 되고 있습니다. 동맹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까지 지금 하는데, 꾸준한 불만과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정부가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상회담에서 덕담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를 들면 그런 미국과의 관세 문제라든지 조지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충력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속히 해결되는 데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한미 관계에 대해서라든지 한국인 근로자나 종사자들의 필요성에 대한 조금 전의 코멘트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장관님, 말로만 성과가 날 게 아니고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미국에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배터리, 반도체, 조선소 등 너무 많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선 이런 비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투자가 가지고 있는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용 관련 규제라든지 건설 관련 규제라든지 여러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번 기회가 그런 리스크를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요. 또한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미국 상무부라든지 국무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방안들을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비자정책 완화 문제는 기업 출신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산업부도 그동안 이런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외교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 대비를 했어야지요. 그동안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하면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서 각각 연 1만 5000명과 또 5400명 취업 혜택을 받아 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정동만 위원** 이런 걸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의회를 통해서 입법화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거기까지 통과를 못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동만 위원** 산업부도 현실을 직시해서 외교부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장관님 직을 걸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김정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영국 BBC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된 조지아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도 챙기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또 오늘 오전 연합뉴스TV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오늘 오후 저녁 비행기로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이 언론 보도에 나온 사건 오늘 질의 많이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많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4일 목요일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 연방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475명을 구금했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장갑차와 헬리콥터가 동원됐고 쇠사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건설현장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입니다.

그다음 날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인데요. 주미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현장에 급파됐고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흘 후,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전세기를 통해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9월 10일 수요일에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민항기 전세기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대략 한 6일간 구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4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일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다'. 혹시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보도는 봤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구금된 노동자들을 가리키면서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 300명 이상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구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통해 본국인 우리나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지요. 혹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추방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 출국해서 귀국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양국 간에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진 출국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오기 전까지에 있는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주무장관으로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배터리공장 건설이 중단될 텐데 투입된 금액이 6조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계약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곽상언 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은 외국 기업들에 있는 영사 문제였기 때문에 주로 외교부를 통해서 대응해 왔던 부분이 있고 저희는 외국인 해외투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새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했고……

○**곽상언 위원** 산자부장관님이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우리 기업이 별도의 피해가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관련 건인데요. 지난 8월 19일 전체회의 때 제가 장관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해서 원전 한 기당 지급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물품·용역 대금, 기술사용료, 로열티 등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을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한 기를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경우에 이 원전의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한 기당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명목 여하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물품·용역 대금이든지 기술사용료든지 로열티든지 대략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수원에서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

○**곽상언 위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곽상언 위원**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국내에서 있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국내 건설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곽상언 위원** 국내 건설에 없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물론 일부 부품을 사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한전과 한수원이 왜, 어떤 이유로 원전을 건설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수를 받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원천기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저희한테 원전 기술을 넘겨주고 저희가 제삼국으로 넘길 때 반드시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나이티드아랍에미리트에도 원자력을 수출했는 데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저희가 기술을 계속 보내 주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고 또 한 아랍에미리트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다가 기술을 보낼 때도 저희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고 하면 지금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원천기술과 상관없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원천기술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한국이든 해외든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다른데 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전제가 다른 얘기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술이 충돌되면 당연히 그 충돌되었는지 여부를 검수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천기술만 웨스팅하우스에 있고 한전·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른 기술이면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국내에다 짓는 것은……

○**곽상언 위원** 그것이 왜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한수원 황주호 사장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이철규** 아니,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답답하게 느낄 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산자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황주호 사장님, 이 원천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CE라는 회사 것을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나라가 최초에 원전 기술을 도입할 때 국내 사용권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샀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국내 사용에 대해서는 원천기술 사용권을 샀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주는 것이고 해외로 넘어갈 때는 그 기술료를 준다든가, 우리가 사용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끝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EDF는, 그 당시에 프랑스는 이 기술을 사 가면서 국내외 사용권을 사 가지고 문제없이 하는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까? 곽상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곽상언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질의드릴 건데요. 그거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 온 것하고 기술을 보유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관세 협상도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불법이민자 문제가 충분히 경고되고 단속도 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조지아에 진출해 있는 엘엔텍이나 현대차 등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짧게 대답하라니까요. 생각한 적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강승규 위원** 협의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세, 특히……

○**강승규 위원** 협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는 했었는데……

○**강승규 위원** 협의한 적 있어요? 미국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미국 측하고는 계속 이 비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두 번째, 현대차 직원이 이번에 연행·구금되면서 현대차 직원은 없었다 그래요. 엘엔텍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만 있었다고 그래요. 미리 정보를 줬다는, 커뮤니티에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정부라든지 관련 기업에서 파악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 커뮤니티 이야기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강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런 ESTA 비자, 관광 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또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이것도 사실은 편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 등을 정부나 관련 기업에서 파악, 논의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파악은 했고 기업들한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규탄하는데 우리 정부라든지 관련 기업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 박성민 간사와 사회교대)

○**강승규 위원** 두 번째, 장관님께서는 에너지가 산업의 주요한 기둥입니까, 산업을 진흥하거나 산업을 부흥하는 데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한 부분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산업부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동한다고 할 때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에너지를 규제 부서로 가져가면,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산업, 통상, 자원 이렇게 부처 이름을 대규모로

지으면서 주요한 축이었는데 그걸 쏙 빼 간다 그랬을 때 산업에 좋은 정책이, 유리한 정책이 나올까요, 에너지 정책이?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있는데요.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희들 책무입니다.

○**강승규 위원** 노력과 지금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반기업 3대 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강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황주호 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황주호 사장님, 제가 하는 데 짧게 대답해야 됩니다.

한국형 원전 AMR이 90%의 원천기술을 확보했고 5% 정도는 아직도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또 아까 말한 외국에 수출할 때 뭔가 로열티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수출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형 원전이라고 막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송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현황이었지요? 예스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코러스 동맹을 맺어서 이런 리스크를 줄임으로 인해서 전체 수주액의 2% 정도 되는 것을 사실상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이 지난 1월 16일 계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랍국가에서는 한수원이 비교우위가 있고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우선 계약을 추진하자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수원 등이 아까 위원들께서 질의한 것처럼 합작법인 등을 만들어서 한다면 한국에도 또 다른 원전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황주호 사장께서 이제 임기도 다하셨는데 최근에 이러한 역적 계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지난 1월 16일 계약 부분에 대해서 산자위에서 국민들에게 한 1분……

1분 정도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성민** 예.

○**강승규 위원** 일이 분 정도로 이 계약의 의미를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이제까지 저희가 수출할 때마다 옥죄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해결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국민적 감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앞으로 시장은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취임하자마자 미국 관세협상에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까지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 관세협상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철강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올해 1월 9일 날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출범시켰는데 현재까지 이 회의체가 몇 번이나 운영되었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했었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난주 수요일, 9월 3일 날 정부가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사업 신설, 특별우대금리 적용,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 같은 조치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TF에서 논의된 게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TF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세협상 관련 내용들이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향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TF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TF가 몇 번이나 회의가 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 방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민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향엽 위원** 내수 창출을 위해서 건설, 토목, 해상풍력 등에 국산 철강재 인센티브를 주고 KS표준을 정착시키겠다 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이 일단 철강 쪽에 제일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요 부분이어서 철강이 들어가는 분야, 특히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건설 부분에 우리 국산 철강이 들어감을 통해서 수요를 좀 부흥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권향엽 위원**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월 9일 날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수립한다 했는데 8월이 지나 9월인데도 지금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만의 문제는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에 제대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이런 위기 산업들에 대한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쁘시겠지만 꼭, 그 현장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실패한 대왕고래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실패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덕근 장관께서 175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하면 다른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오차 보정을 해서 시추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2월 6일 자 산업부 보도자료 설명에 보면 중간 결과는 정밀분석 후에 5월이나 6월경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를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호현 차관님,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아직 시료 업체가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권향엽 위원** 중간 보고 발표를 5~6월에 한다고 그랬고 최종 보고를 8월 내지 9월경 한다고 했는데 8월은 지났습니다. 9월은 발표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권향엽 위원** 언제 발표하실 계획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고 최근 관련된 절차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향엽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왕고래 실패를 지적했고 제 질의에 안덕근 당시 장관님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액트자오의 유망성 평가가 우리가 탐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곧 확인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 알려진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추했던 이 사업은 8750만 달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200억 정도가 넘는 비용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그때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있었던 과정에 어떤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종 분석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걸 계속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권향엽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기후에너지부로 분리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짚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계약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마찬가지고 부처가 분리되면서 사실 유야무야할 수 있고 덮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시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했었던 그 당사자,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그 사람을 대통령 과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승진시켜서 현재도 근무하게 만들고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석유화학공사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 가스 이슈는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저희 산업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풀로업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고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조지아주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방송에 보여지는 대로 쇠사슬로 된 포승줄에 손이며 발이며 압송되는 모습들 그리고 방송에서 그 구금시설에 대한 열악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욕감과 수치감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가족들은 어땠을까라는 먹먹함이 저를 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 어디에도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10일쯤에 전세기를 동원해서 온다고 하지만,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워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 내용의 중심에 전세기가 있고 또 이 전세기로 오고 가는 부분들을 연출해서 성공적인 연출로 포장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700조 원 선물을 약속하고도 이렇게 뺨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성과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국익은커녕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도 지켜 주지 못한 우리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열악한, 15세기 아프리카 노예도 아니고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서 압송당하고 또 관세 부분도 자동차 관세, 매달 5000억 원의 부담분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 산업부, 어디에 있었는가 묻고 싶고.

언제 인지했습니까, 이런 사실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9월 4일 날 그때……

○**구자근 위원** 물론 그 전에는 모르셨겠지만 방송 나온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토리 브래엄 공화당 의원의 신고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임명되기 전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45일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들이, 논란들이 있는 겁니다. 45일 동안 묵혀 놔 놓고 미국 조

지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을 보고 이걸 터뜨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했다는 지점들이 정치적 해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것들이 이재명 특검에서 미국 오산기지 압수수색하는 거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시설 압수수색하는 이런 부분들, 그려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게 나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워딩을 그대로 트럼프가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에 통화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사전 통보받은 게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장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고 장관님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관련 재발 방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국민들이 무사히……

○**구자근 위원** 장관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45일 전에 이렇게 공화당에서 신고를 했고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는데도 순위에 밀렸던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볼펜 하나에 밀리고 사진 한 장에 밀렸던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한테 700조 부담시키고, 넓게는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들 부담시키고 나서 또 우리 기업들 등골 빼먹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기업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오른쪽 짭 맞고 왼쪽 짭 맞고 어디 가 하소연합니까,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뉴스만 틀면 야당 탄압하는 거, 정치 보복하는 거, 이거 꼭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 국회에서는 기업들 옥죄는 법안들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숨통 조이게 하는 겁니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국내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에 전해 주는 시그널은 제발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기업들 살려거든 밖으로 나가라 이런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너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너 같으면 대한민국 이 현실 상황에서 기업 투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짧게 코멘트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비자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 지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조 딜을 할 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께 산업부장관으로서 이 의제안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지금 합의문이 없고 국민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압송되는 모습을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안 보는데 영화 하는 줄 알았어요, 영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장관님, 그거 어디에서 봤습니까? 처음 보고를 어디에서 뭘 통해서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처음 일단 봤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뉴스에서.

○**박성민 위원** 어땠습니까?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옛날에 아주 중세시대 때 영화 보듯이 이렇게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장관님 심정이 어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도 현장에 진짜 수십 번 다녀 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 정말……

○**박성민 위원** 그랬겠지요. 지금도 그런데 일국의 담당 장관님이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그랬을 줄 압니다, 저도. 이게 미국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채워서 압송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제가 기억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기업을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성민 위원** 우리도 과거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건설현장이 많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랬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도 수백 명 노동자들이 건설하고 했었지요. 우리 근로자들이, 비자 만료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현재 파악된 게 한 400명 언저리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박성민 위원** 물론 유형은 다릅니다마는 비자가 만료되면 며칠 이내에 어떻게 된다, 며칠 이내에 어떻게 된다, 그 조치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렇기도 하고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게 ESTA 비자를 가지고 갔던 게 가장 큰 이유……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위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기본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추방하는 걸로……

○**박성민 위원** 추방하지요. 추방하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입국 못하게 한다, 3년 이내에 입국 못하게 한다 그런 형별 아닙니까. 주로 그런 조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수갑을 채우거나 쇠사슬로 묶어서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박성민 위원**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중범죄자들이 그런 체포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민단속국 아주 악명 높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지난번에 미국 LA에서도 강제 조항이 있어서……

○**박성민 위원** 아니, 악명이 높든 말았든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면서요. 미국 역사상도 처음이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조치를 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공장을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 이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

○**박성민 위원**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전통적인 우방이고 어느 나라보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은 나라라든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아주 경제협력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었고 특히나 11일 전에 정상 간의, 각국 대통령들이 경제협력을 통한 정상외교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700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 또 마스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사업 협력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에서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우리 K-원전이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같이 손잡고 하자, 조인도 하자 이런 상황이 있고 난 뒤에 바로 10일 뒤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장관님, 우리가 뭔가 지금 혼선이 있었던 것이고 뭔가 다른 의도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저도 저희 카운터파트인 상무부장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박성민 위원** 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역사에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극단적인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번 앞으로 풀어 가는 과정을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트럼프가 숙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 종교 탄압을 했다, 심지어는 잭 스미스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보도된 대로 한국 관계라든지 지금 들어와 있는 한국의 종사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무슨 국교가 없는 다른 아주 형편없는 나라나 북한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700조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어제아래 대통령이 갔다 온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굴욕적인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오픈해서 새로 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첫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눈물 정도가 아니고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동안 보면서 나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위원장님,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수원 사장 공모 절차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 현대차 공장 현장에서의 단속, 이것이 단순히 비자 문제 또 출입국 문제로만 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여러 가지 합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미국의 비자제도를 위반해서 가서 일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본다면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일단 다양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들에 대해서 사용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하여간 다양한……

○**위원장 이철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 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동포가, 우리 국민들이, 자국민이 동맹국이라는 미국에서…… 좋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체포하고 구금도 할 수 있겠지만 테러범처

럼 별세워 놓고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운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감당하는 분들로서 상당히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또 단순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 두 나라 사이에 뭔가 상당한 갈등이,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한미 통상협상을 할 때 우리가 2000억 불을 펀드 조성한다고 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1500억 불은 조선 분야고요.

○**위원장 이철규** 우리가 2000억 불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1500억 불은 조선업에 투자하겠다, 이것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불 구매해 주겠다, 이것으로 지난번에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 당시에 2000억 불에 대해서 분명히 장관께서는 여기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2000억 불은 현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보증이라든가 또한 융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성되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출자와 융자와 보증,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했고, 그 자금의 사용 기준이라든가 목적 또 투자처를 정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사용을, 여기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당시 제 기억에 에너지 분야 그리고 핵심 광물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 분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당시에 사실대로 보고해 주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이견이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는……

○**위원장 이철규** 이견이 없었다, 논의도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논의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었고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좋습니다. 정상 간 대화에서는 논의라든가 이견이 없었다 하더

라도 각료급 대화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든가 또는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 협상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때도, 한미 통상협상 직후에도 이 돈의 투자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전부도, 90%도 미국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미국은 밝혔어요. 그런데 당시에 협상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런 논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일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뭐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9 대 1이나 1 대 9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된, 이게 구체적인 실무화 과정에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서로 인식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위원장 이철규**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없었는데 당시도 왜 바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담해서 조성한 자금이 전부 다 손실이 나 가지고 깡통이 될지도 모르는 깡통계좌로 들어가는데, 또한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도 있고 또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스크와 수익이, 당연히 그 손실을 감내하는 자에게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투자 결정도 자금을 대는 쪽에서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협상을 할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들은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국익에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무조건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공작이었다, 아무 결과도 없는데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일본이 협상을 하는 데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를 들면 5500억 불에 대해서 일본은 처음에 할 때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9 대 1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 대 1도 아니고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5 대 5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원금 상환하기 전에는 이자나 원리금, 투자에 수익이 날 경우에 원금 상환이 될 때까지는 90%를 일본이 먼저 가져가고 10%만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 내용에서 보면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원금 상환 전에도 일본이 50%, 미국이 50%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

요.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출자와 용자와 보증이 같이 패키지로 돼 있었는데 이번의 발표에서는 전액 출자로, 에쿼티(equity)를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5500억 불을 특정한 분야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일본은 직접 5500억 불이……

우리는 펀드가 2000억 불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우리는 전체 3500억 불이고요. 1500억 불은 조선이고 2000억 불은……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런데 1500억 불은 조선업에, 그 당시에 1500억 불은 우리 기업이 직접 조선업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그냥 펀드식으로 조성하는 금액이 2000억 불이란 말이지요.

우리 외환보유고가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한 4400억 원정리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4400억 불인데 기업이 투자하는 1500억 불은 현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달해 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조달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역내에서 자금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면 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전체 규모는 3500억 불입니다. 그중에 일종의 이어마크라고 해 가지고 딱 나눠지는 부분이 1500억 불이 조선에 특화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000억 불이 다른 분야로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3500억 불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전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지금 제가 한 4400억 원정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사천이삼백억 불 되는데, 이것 곧바로 외환위기 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만약에……

○위원장 이철규 어디서 그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4000억 불이라고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1조 4000억 불 되는 데서 일본에서 5500억 불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출자다 이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똑같은 방식은 아니고요, 일본은 그것 자체가 그냥 에쿼티로 들어가는……

○위원장 이철규 가는 것이 우리는 3500억 불이고 일본은 5500억 불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일본의 경제 GDP 규모가 우리보다 한 2.5배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한 4조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2.5배가 되고 그다음 일본이 외환보유고도 우리의 한 3배가 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일본도 그게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과연 3500억 불을 현금출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 당시에 한미 통상협상, 관세협상을 할 때 충분한 분석 이런 것하에 약속을 해야지 그냥 덥석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쌀 협상에서 거절했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쇠고기 30개월 거절했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사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과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허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사과 관련된 내용은 제 기억에 일종의 검역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서 미국 데스크, US 데스크를 만들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철규 지금 현재도 사과는 우리가 수입금지 품목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사실상 사과를 검역이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입을 하기 어려웠었는데 풀어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풀어 주겠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검역 관련해서 미국 측이 편리하게 검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장관님, 우리 국익을 중심에 둔다고 하는데 월령 30개월 쇠고기를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제한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30개월을 풀어서 원산지라든가 월령 표시를 제대로 했을 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국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뚫어 놓고 30개월로 제한하면서 다른 걸 주는 게 도움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다양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철규 저는 쇠고기 30개월을 미국의 축산업자들, 미국 통상 당국은 30개월을 그냥 블러핑(bluffing)으로 던지고, 우리 한국이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30개월 초과 쇠고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인식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이것을 가지고 카드로 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합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50개월, 60개월 월령의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할 때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체 수입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왜 그런 식

으로 대응하지요?

이것이 과거에 2008년도 쇠고기 수입 당시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당시 현재의 여권에서 또는 당시에 반대하던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속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소고기 수입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한국을 자극하는 게……

○**위원장 이철규** 글쎄, 자극하는 게 자기들 손실이에요. 풀어 달라 할 때 그러면 차라리 풀자, 이것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마치 우리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쳐 가지고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공격을 해 대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꼭 당하고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당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국내적으로도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득을 해야지 왜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수입을 푸는 것이 마치 엄청난 잘못된 정책인양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김원이 위원** 장관님, 대응 잘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예.

○**위원장 이철규** 하여튼 김원이 간사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것 지적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님 좀 나오시지요.

한수원 사장님, 아까 여당 위원님들 질책, 추궁에 사임하시겠다 했는데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절차에 따라서 저에게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연임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의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전혀 그런 건……

○**위원장 이철규** 없으신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그냥 임기는 끝났는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공운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공운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황주호 사장께서 그 자리가 탐나거나 미련이 남아서 지금 있는 것 아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저는 기술인으로 살아오신 한수원 사장님께서 그 정도의 자존심과 명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고 면접번에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웨스팅하우스와 협약을 하면서 이것이 매국노와 같은 계약이었다, 노비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한수원 사장님 그다음에 여기 산업부장관, 관료들 계시는데 우리 원전의 원천기술 어디 겁니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왜 자체기술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시켰나?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지.

○**위원장 이철규** 말씀 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장관님, 2차관님, 한수원 사장님의 말씀이, 답변이 맞나요?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5분밖에 안 주더니.

○**위원장 이철규** 이건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내 질의가 아니에요.

차관님, 장관님, 한수원 사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한수원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이십니다.

○**김원이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 가만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술 독립했다고 2017년도에 전임 한수원 사장, 정재훈 사장이 이 자리에서 이 기술은 한국 기술이고 우리는 기술 독립을 했다, 기술주권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한국이 맺어 왔던 기술사용 계약을 파기하고 연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나요?

○**김원이 위원** 본인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독립했다고. 그러면 그때 바꿨어야지요, 대답을.

○**위원장 이철규** 언제 기술 독립을 주장, 답변하셨나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게 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김원이 위원** 뭐라고요? 지금 위증이에요, 그것!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는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독자기술 있다고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요,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저 뼐뼈하신 것 봐.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조지아 현장 상황 때문에 이게 안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매국노 계약이다 또는 노비 계약이라고 하는데 기술사용료가 국제관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계약의 상황이 이미 다 노출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 산자위 전체회의 때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치 또 그게 안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장관께 보고를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대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저 질의시간 주세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 계속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시 한번 다쳐 본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간사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원이 위원** 아니, 방금 위증에 대해서 제가 분명……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추가질의 드리세요. 3분 드리세요.

○**김원이 위원** 아니, 진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철규** 왜, 지금 하신다면서.

○**김원이 위원** 아니, 위증죄만 물을게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 말씀하세요. 하시라니까.

○**김원이 위원** 아니,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다 5분밖에 안 주더니 본인은 지금 한 30분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하시라니까. 무슨 30분이에요?

○**김원이 위원** 20분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15분 정도 됐구먼.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사회를 보면서, 내 질의가 아니라 아까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짚어 준 거예요.

○**김원이 위원** 정리도 적당히 하셔야지요. 25분이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철규** 하시라니까.

○**김원이 위원**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도 하세요.

○**구자근 위원** 아니, 진행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원이 위원** 적당히 하셔야지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원이 위원** 안 하렵니다.

○**위원장 이철규** 왜 안 하세요? 하시지.

○**김원이 위원** 아니, 제가 항의하는 것만 남겨 놓고 그만하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보세요. 질의를 하시면서……

○**김원이 위원** 그렇게 하면 ‘김원이 너도 했잖냐’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지요, 진짜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오늘 따져 보세요.

○**김원이 위원** 아니, 적당히 5분, 10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위원장 이철규** 적당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김원이 위원** 25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간사님.

○ 김원이 위원 예.

○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 왜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왜곡시킨 게 누구입니까? 나는 조지아 문제든 뭐든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 김원이 위원 다 정치적인 문제였구먼요, 질의가.

○ 위원장 이철규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의하세요.

○ 김원이 위원 황주호 사장님, 내가 이렇게 끝내려고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인터뷰 할 때마다 독자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뭐 저런 분이 다 있어?

○ 박성민 위원 됐다. 뭘 말을 그렇게 하노, 표현을.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기술 자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술의 원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김원이 위원 원천기술은 갖고 있지만 독자기술을 충분히 해서 그래서 분쟁까지 간 것 아니에요! 분쟁 갔어요, 안 갔어요? 웨스팅하우스랑 분쟁했잖아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분쟁 갔지요.

○ 김원이 위원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했지요? 국내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웨스팅하우스 너네 기술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 박성민 위원 아니, 김 간사! 김 간사!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을……

○ 김원이 위원 그러면 분쟁을 왜 갔어요?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을 왜 했어요!

○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중단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 위원장 이철규 충분히 오늘……

김원이 간사님.

○ 김원이 위원 정말 웃기신 분이네, 저분.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 사업적으로……

○ 김원이 위원 들어가세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사업하는 사람이……

○ 김원이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고……

○ 김원이 위원 그동안 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쩜 저렇게 나오나.

○ 위원장 이철규 황주호 사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 박성민 위원 왜 이라노, 김 간사.

○ 김원이 위원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 박성민 위원 그렇게 흥분할 문제가 아니구먼 뭘 그렇게 흥분하고 하노.

○ 김원이 위원 그동안에 저분이 독자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고 그 소송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송 극복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체코 원전 계약하려고 그냥 무더기로 다 펴 준 것 아닙니까, 50년 노예계약!

○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 50년 계약이 노예 계약인지 종속 계약인지 다시 보고받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여야 간에 공방이 있고 명확하게 답변 없이 넘어가면

국민들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장관님 또 한수원 사장님, 오늘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들을 지셔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전 관련해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게 1분만, 물론 우리가 보충질의 안 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2분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한수원 사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사장한테 하면 안 되지요. 그냥 본인 주장을 하시면 되지요. 그건 질의가 되잖아요.

○**박성민 위원** 본인은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발언에 대해서……

○**김원이 위원** 저는 마이크 꺼진 채 했잖아요.

○**박성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듣고 이야기하라고.

○**김원이 위원** 마이크 꺼진 채 했어요. 저 마이크 안 켜고 했어요.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라면서요.

○**위원장 이철규** 들어 보세요.

○**박성민 위원** 사장님, 체코 원전을 노예 계약이니 굴욕 계약이니 이렇게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일단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지요,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기술사용료라고 볼 수 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미국 회사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 팔았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원래 컨버스천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았는데 기술이전받으면서 그 원천성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한 겁니다. 그것을 웨스팅하우스가……

○**박성민 위원** 당초 영국에서 도시바로 판 것, 그것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웨스팅하우스가 영국에 팔렸다가 영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팔았다가 일본이……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바에 팔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제가 알기로 한 4빌리언(billion)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7조 정도 되지요, 7조?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40억 불이니까요.
-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그게 사모펀드 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팔려 나갈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때 제가 알기로 한 60억 불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화로?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한화로 지금 한 9조, 8조 정도 되지 않을까……
- **박성민 위원** 9조 정도 되면,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의 주수입이 뭡니까? 그 사람들 주로 시공을 많이 합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시공 안 합니다.
- **박성민 위원** 시공 안 하고 주로 기술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9조나 주고 회사를 사 가지고 기술료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것 정당한 기술료 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보면 기술을 사용하려면, 9조나 주고 회사를 산 사람인데, 9조나 주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사용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 **박성민 위원** 아니, 지금 체코 원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 줬지요, 2%?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기술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모든 상업 절차에서는 다 기술료는 주고받습니다.
- **박성민 위원** 입장 바꿔 놓고 우리가 9조나 주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데 돈 안 받고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고요.

김원이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2분 넣으세요.

- **김원이 위원** 황 사장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 **김원이 위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소송을 걸었지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 **김원이 위원** 언제 걸었어요? 한 1~2년 됐지요? 1~2년 넘었나?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넘었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한 2~3년 됐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한테 소송 왜 걸었어요? 예를 들어 소송의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연방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수출 통제……

○**김원이 위원** 왜 그러면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자신의 원천기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둬야 되는데 한수원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건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한수원의 어떤 행위 때문에 ‘애네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구나’라고 웨스팅하우스가 판단했을까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수출입니다.

○**김원이 위원** 수출 왜, 어떤 부분에서?

수출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원이 위원** 웨스팅하우스의 통제를 안 받고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따로 팔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체코나 USA나, 특히 체코 팔면서 그 문제를 겪 거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요.

○**김원이 위원** 맞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김원이 위원** 그게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면 뭐가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런 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김원이 위원** 들어 보세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당신네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 한다’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황 대표님, 들어 보세요.

그러면 별씨 이 소송이 한 2~3년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거니까 한수원이 맞대응을 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그때 바로 승복 안 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승복 안 합니다.

○**김원이 위원** 승복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 다뤄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승복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다뤄 보다가 저희가 승복할 만하니까 승복하는 겁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해 보다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접은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원이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소송하지 그랬어요. 소송을 계속해서 한번 분쟁을 끝까지 가 보지 왜 접었어요?

2~3년 동안 웨스팅하우스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원천기술을 한국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3년이 넘게 왔어. 그런데 갑자기 한수원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서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분쟁이 끝났어요.

○**강승규 위원** 회의를 좀 제대로 합시다. 저도 좀 합시다. 회의를 제대로 합시다, 발언권 가지고.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끝났습니까?

○**김원이 위원** 예, 들어가세요.

여기서 상식 있는 분들은 다 판단하시겠지요.

.....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황주호 사장님, 저 앞으로 반대편 쪽으로 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철규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술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우리가 국내 사용권을 샀지만 해외 수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정리하는 모습에서, 물론 기술자 출신이지만 사장까지 하셨으면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독자기술이라고 그랬다가 독자기술이 아닌 것으로 해서 또 기술사용료를 줬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황 사장님이 설명하는 데 문제가 좀 있으세요.

UAE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도 그렇고 우리가 국내에 들여와서 AMR3000이니 5000이니 만들면서 우리가 독자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강승규 위원**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수출하려고 바라카도 갔고 두코바니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그중에 원천기술은 아직도 우리 거다’ 그렇게 해서 바라카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니 뭐니 민주당이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상당 부분의 로열티든지 뭐가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강승규 위원** 두코바니도 지금 한국형 원전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자기술을, 사실상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하고 해서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월 15일 날 했다고 하길래, 코러스 동맹을 맺었다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규(argue)가 있는 부분 등을 협상으로 좀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지요. 그렇지요? 그게 진실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김원이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김원이 위원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비즈니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완전히 한국형으로 바꾼 거다’ 해 놓고, 하지만 그것을 수출했던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비즈니스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되는데 김원이 위원 얘기할 때처럼 막 원천기술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하니까,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95%는 다 한국형으로 바꿔었는데 그래도 원천기술은 좀 남아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 소송에서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한 거 아니냐,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스, 노라고 대답하라니까 예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겠냐는 거지요.

.....

○위원장 이철규 들어가십시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이 간사님, 더 발언하실래요?

○김원이 위원 하고 싶은데 다들 정리하는 분위기인네요.

○위원장 이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9일과 10일에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다음 9월 11일, 22일, 24일에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오늘 상정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 추가로 심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권향엽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특허(13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정호 김한규 송재봉 장철민	더불어민주당(7)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이종배 장동혁	국민의힘(5)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13인)	김동아 ◎김원이 박지혜 오세희 이재관 정진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7)
		강승규 구자근 김성원 박형수 정동만	국민의힘(5)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13인)	권향엽	
	김동아	
	박지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7)
	이재관	
	◎장철민	
	허성무	
청원심사(5인)	강승규	
	구자근	
	박상웅	국민의 힘(5)
	서일준	
	정동만	
서왕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김동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3)
	전재수	
◎서일준		
장동혁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6인)

강승규 곽상언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첨가 위원(3인)

김성원 김성환 전재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차관보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정책기획관 안창용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무역정책관 서가람
투자정책관 유법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차관 노용석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우중
창업벤처혁신실장 임정욱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특구혁신기획단장 이귀현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정균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 신상곤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
특허심사기획국장 정연우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황주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이상 2건 8월 25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4)

이상 2건 8월 26일 회부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2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3)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2025. 8. 26.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0)

이상 4건 8월 27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이상 4건 8월 28일 회부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8.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9)

이상 5건 8월 29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0)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8)

9월 2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4)

이상 3건 9월 3일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7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4)

이상 4건 9월 4일 회부됨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8)

9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8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8. 28. 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8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8)

이상 2건 9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계획서 송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재정 관련 자료

(이상 2건 2025. 9. 3. 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보고서 송부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이상 2건 2025. 9. 3.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이상 2건 9월 4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51	39	22	4	280
중소벤처기업부	24	14	29	4	77
특허청	4	12	15	3	35

○보고서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2025. 8.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2025년도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2025. 8.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2024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

(2025. 9.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